

[] 건설기계형식 승인(변경승인)신청서
[] 건설기계형식 신고(변경신고)서
[]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

(앞쪽)

| | | | |
|------|------|------|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기간 | 승인(변경승인): 15일 신고(변경신고): 10일 동일형식수입신고: 7일 |
|------|------|------|--|

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신청 (신고)인 |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 | 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 |
| | 주소 (전화번호:) | |

| | |
|-------|----|
| 건설기계명 | 규격 |
|-------|----|

| |
|--------|
| 건설기계형식 |
|--------|

| |
|-------|
| 원동기형식 |
|-------|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|
| 제작사명(제작국) | (전화번호:) |
|-----------|----------|

| 변경승인신청(신고)의 경우 | 변경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| | | |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(신고)인: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
검사대행자

귀하

| | | | |
|------|-------|-----|--|
| 첨부서류 | 뒤쪽 참조 | 수수료 | 형식승인: 572,000원 형식변경승인: 286,000원 형식신고: 462,000원 형식변경신고: 231,000원 동일형식수입신고: 231,000원 |
|------|-------|-----|--|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첨부서류

1. 형식승인(변경승인)신청

- 가.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
- 나. 건설기계의 외관도
- 다. 변경 전·후의 제원대비표(변경승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
- 라. 「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). 이 경우 동 서류는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, 정부나 외국 정부가 공인하는 시험·연구기관(이하 "공인시험·연구기관"이라 합니다)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- 마. 도로이동 시의 분해·운송방법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)
- 바.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설기계의 제작·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. 다만,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

2. 형식신고(변경신고)

- 가.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
- 나. 건설기계의 외관도
- 다. 변경 전·후의 제원대비표(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
- 라.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「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).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, 공인시험·연구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- 마. 도로이동 시의 분해·운송방법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)
- 바.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설기계의 제작·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. 다만,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

3.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

- 가.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
- 나. 선적서류 사본
- 다.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. 다만,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

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